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원중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29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1일
발 의 자: 김원중 의원(1명)
찬 성 자: 경기문, 곽향기, 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박춘선, 박환희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윤기섭, 이병윤, 이봉준, 이종환, 이희원, 최민규, 한·신, 허·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신설된 제2조의 2, 제5조의3에서 제5조의5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,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- 또한, 조례 제정 이후 개정되지 못한 위원회 관련 조항을 현행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와 일치시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제1항).
- 나.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 진흥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수정함 (안 제3조2).

다. 박물관·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박물관 분과 및 미술관 분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, 회의 일정 및 안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함.(안 제6조제2항 및 제4항, 제7조제4항, 제8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“(박물관·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노력 등)”을“(시장의 책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육성을 위하여”를 “확충,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·육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의 제목“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)”을“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법 제9조”를 “법 제5조의3”으로, “서울특별시의”를 “서울특별시에 위치한”으로, “계획”을 “시행계획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분야 및”을 “분과 및”으로, “분야로”를 “분과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“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”을 “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”으로, “알려야”를 “통보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박물관·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노력 등)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)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박물관·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이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박물관 분야 및 미술관 분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확충,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·육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) -- 법 제5조의3 --- <u>서울특별시에 위치한</u> ---- ----- <u>시행계획</u>----- -----.</p> <p>제6조(박물관·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분과 및</u> --- --- <u>분과로</u> ----- -----.</p>

③ (생략)

<신설>
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③ (생략)

<신설>

제8조(위원회 운영) ① 시장은 회의
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
회의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
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
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
하지 아니하다.

② (생략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
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
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
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
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③ (현
행과 같음)

④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각종
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
례」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
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
있다.

제8조(위원회 운영) ① -----

---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
정과 안건 등---- 통보하여야
----. ----- 사유로 위원회를
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
관련된 사항 등은 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문서번호

2023100600000026

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김원중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손제승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06.

회신일 : 2023.10.10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(시장의 책무), 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)의 제목을 변경하고, 그 밖의 조항 문구를 구체화 및 수정한 개정안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손제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